

# 한국공항공사 제6기 건설기술자문위원단 공개모집 안내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항 건설사업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 (자격요건 및 모집분야) [붙임1] 참조

□ (임 기) 2024.11.1 ~ 2026.10.31. (2년)

□ (주요임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계획·조사·설계용역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
-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등

□ (접수기간) 2024.8.19 ~ 2024.9.8.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iyelee@airport.co.kr](mailto:jiyelee@airport.co.kr))

※ 작성 및 제출양식 미준수시 별도의 안내 없이 후보자에서 탈락되며,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및 추가제출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제출목록	대상자	파일명*	파일형태
별첨1 (등록신청서) *첫번째 시트 '등록신청서'만 작성	지원자 전체	별첨1_세부분야명_성명_직장명	EXCEL 원본
별첨2-1~2-3 (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지원자 전체	별첨2_세부분야명_성명_직장명	서명 후 스캔하여PDF
별첨3 (공공건축심의 자격대상 확인) * 자격 충족시 해당분야 우대	세부분야 <sup>2</sup> 의 도시·단지계획/건축계획/조 경계획 지원자 중 본 안내문 [붙임2]의 자격 해당자	별첨3_세부분야명_성명_직장명	EXCEL 원본
직장 및 자격 증빙서류 - (필수)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 (해당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저서 및 논문 표지사진 등	지원자 전체(필수 서류)	증빙서류_세부분야명_성명_직장명	PDF

\* 파일명 예시 : '신청서\_공항계획\_홍길동\_공항공사'(X) → '별첨1\_공항계획\_홍길동\_공항공사' (O)  
'재직증명서\_토목시공\_홍길동\_공항공사'(X) → '증빙서류\_토목시공\_홍길동\_공항공사' (O)

## □ (기 타)

- 본 안내문 및 제출서류는 **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http://www.airport.co.kr))-고객참여-공지사항**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자문위원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선정된 위원은 별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심의·평가지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세부내용 [붙임3~4] 참조)
-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정보는 자문위원 선정자료로만 사용되며, 위원 미선정시 폐기 예정입니다.
- 기타 본 건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2660-2357

- 붙임 1. 자격요건 및 모집분야 1부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 1부  
3.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 1부  
4.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윤리행동강령 1부  
5. 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 자격요건 및 모집분야

□ 자격요건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항목	자격 요건
1	건설·기술분야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건설·기술분야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건설·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연구원
5	건설·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8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3항부터 6항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분야

전문분야	세부분야	인원
도시개발	도시·단지계획	9
	도로 및 교통(계획)	
토목	공항계획	45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포장(활주로 등)	
건축	건축계획 및 설계	100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	건축기계설비	20
	운송설비	
	항공급유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전 및 배전설비	20
	항공등화	

통신	정보통신	10
조경	조경계획	5
	조경시공	
환경	소음, 신재생에너지	8
	자연환경	
소방	소방설비, 방재	5
CM	VE	25
	건설사업관리	
	품질	
안전 관리	건설안전	15
	시설안전	
스마트	스마트건설	7
	스마트유지관리	
디자인	경관디자인	8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	
계		277

【붙임 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격요건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3항

항목	자격 요건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요건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항목	자격 요건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 붙임 3 】

##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

□ 관련근거 : 공사(公社) 건설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세부내용

1.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사.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아.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윤리행동강령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이라 함은 건설사업 관련 심의·평가·자문 등을 위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자문위원이 한국공항공사 기술자문·심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운영지침 제6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의·평가와, 동 지침 제6조 제1항 1호에 따른 자문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조 【특혜의 배제】

자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할 수 없다.

### 제5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자문위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명칭이나 자문위원의 직위를 공표, 게시할 수 없다.

### 제7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자문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문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자문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통상적인 사고·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문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자문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자문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 제10조 【이해관계인 직무의 회피 등】

- ① 자문위원은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직무를 사전에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심의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는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자문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자문위원은 건설기술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자문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자문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자문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자문위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를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 1.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 2.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3. 소속기관의 상급자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 제13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 ① 자문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문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문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강령의 이행 및 준수

### 제14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 ① 자문위원은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자문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경우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접촉 목적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포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직무관련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

- ① 자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자문위원이 임의 해석한 후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5장의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따른다.

- ③ 자문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 제16조 【경미한 위반】

자문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 【중대한 위반】

자문위원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에 의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촉을 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 제18조 【교육 등】

-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과 강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등이 어려울 경우 청렴안내문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건설사업실장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준용한다.